
- 2019년부터 시행되는 -
『간이지급명세서』 제도 안내

- ◆ '19년부터 근로소득자의 장려금 반기소득 파악을 위한
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이 신설됨

□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주요 내용

【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164조 제1항, 제164조의3】

○ 제출 대상 및 제출 기한

-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및 거주자·비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(상반기 7.10, 하반기 1.10)

○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변경

구 분	현 행	개 정
1분기	4월 말까지	4월 10일까지
2분기	7월 말까지	7월 10일까지
3분기	10월 말까지	10월 10일까지
4분기	다음해 2월 말까지	다음해 1월 10일까지

○ 제출 방법

- 원칙(전산매체*), 예외(서면제출, 일정업종 및 일정규모미만 사업자)
* 흠택스 전자제출 및 전산파일로 세무서에 접수

○ 가산세(소득세법 제81조 제1항)

- 미제출(5/1,000), 3개월내 지연제출(25/10,000)
 - 지급금액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(5/1,000)
- * 다만,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50% 경감

○ 범칙처분(조세범처벌법 제14조)

- 거짓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행,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경우
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이하의 벌금